
한국의 현황과 해결과제

2022. 7. 12.

이희숙 변호사

코로나19 영향과 과제

소득불평등 증가
빈곤 증가
교육격차 증가

소셜섹터 활동
수요 증가

SDO
펀딩 부족
규제 증가
인재 부족

해결과제

효율적 업무 수행 인프라
인건비 사용 규제 완화
모금 규제 완화 및 지원
기업기부 활성화 정책
SDO 사회적 신뢰 제고

정부 110대 국정과제

- 기부금단체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 도입 (세부 지출 내역,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영수증, 전용계좌, 기부금품법 개정)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지원 기관 운영)

현장·현금모금
즉석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시
제재 강화

기부금품법 개정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
(NPAS) 고도화

감사원 산하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
모니터링 자문 강화

정기적 점검
국세청 개별 검증 의무화

효율적 업무 수행 (중복 관리 감독)

- 보고서에서 Doing Better 법률과 규제 간결화 필요 제시, 한국은 법과 규제 이해하기 어렵다 75% 이상

• 현황	중앙정부 부서 26개	비영리 법인 설립 및 등록 절차 관리
	지자체 17개	비영리 법인 설립 과정 관리
	국세청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 및 감독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관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리

: 공익위원회 설치 논의 및 정부 법안 발의되었으나 시민사회 반대 입장 및 추진 동력 부재
: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감독 강화

- 통합관리기관 재논의 필요
- 기부금품법에 따른 관리와 국세청 기부금 관리 통합 모색
- 민법 개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개정 필요

효율적 업무 수행(공시제도 개선)

- 출연재산 보고서와 공시 서식 통합 필요
 - 미리 채움을 통해 중복작성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서식 통합 방안 마련
- 공시 작성 방법 명확화 및 서식 개정 (기부금 지출금액,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등)
 - 공익법인의 신고편의와 기부자에 정보공개 취지 감안하여 개선방안 검토하고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작성 방법 개선
-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개선
 -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검색시스템 개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페이지에 안내 문구 보완
- 공시제도 지원 시스템 개선
 - 공시오류 수정기간, 오류확인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식 변경 사항 공시시스템 공지, 안내문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
- 공익법인 공시서류 내 주석작성 표준안 마련
 -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관련 표준 양식 마련

효율적 업무 수행 (온라인총회)

 <p>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p>	<h2>보도참고자료</h2>	<p>(배포)2020.12.23.(수)</p>
--	-----------------	---------------------------

○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 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요청이 쇄도하였고, 온라인 총회가 문제없이 진행됨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 상시적 허용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비영리법인 정관에 비대면 총회 개최방식을 규정해도 되는지 등

**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법무부 유권해석)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됩니다.**

* 총회 개최 방식 등 구체 사안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기관인 주무관청과 협의 바람

- 민법 개정, 의사록 서명(전자서명) 도입 입법 추진 의사
- 전자투표 시스템 지원 필요
- 총회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필요

인건비 사용 규제 완화

- 보고서: 인력 충원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이 가장 어렵다고 답함

여론은 모금단체 불신하고, 기부자는 모금단체 신뢰한다(더나은미래 21. 10. 19)

'비영리단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예상해보라'는 질문에는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8.8%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8.7%)을 지목한 응답자는 둘째로 많았다. 더나은미래가 지난 1월 추산한 국내 비영리단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2163만~2472만원이다.

- 규제 현황

: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모집비용 15% 규제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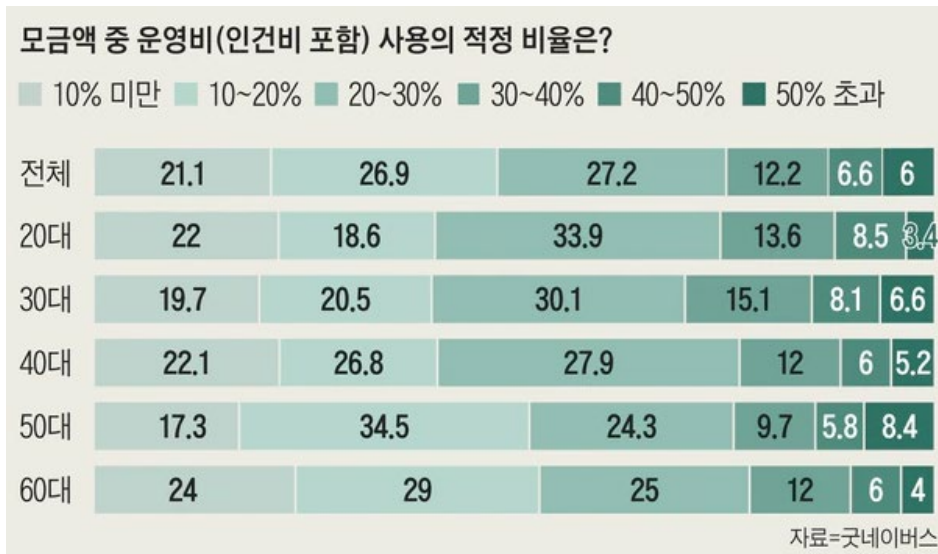
최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단체 인건비는 모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모집비용 초과 등을 이유로 법인과 사무총장을 형사처벌 (상고심 계속 중)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금지(제6조 제2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업비(단체 임직원 보수 아닌 실비 성격 경비)에 한정(제6조)

인건비 사용 규제 완화

- 인재확보를 위한 인건비 사용 규제 완화 필요
 - : 기부금품법 모집 비용 규정 개정 필요
 - 모집비용 규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출처: 더나은미래 21. 10. 19.자 기사)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모금 규제 완화 및 지원

- 보고서: 규제와 세금혜택이 기부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
- 규제현황

: 기부금품 모집 등록 의무

1,000만원 이상 모금 시 등록 의무, 모집 목적 제한, 모집 등록 시기 제한, 사용 용도 제한 등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의결권 없는) 회원의 정기 후원회비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으로 판시
사단법인 후원회원에게 의결권 부여하는 경우, 총회 의결 인증 업무 부담 증가(인감증명서)

→ **온라인 모금 활성화에 제약**

(평균 크라우드모금 이용 28%, 의향 59%, 우리나라 이용 19%, 의향 45%)

: 부동산 기부 시 규제

3년 내 직접 목적사업용 사용, 기부자 무상 사용 금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편입 등

"기부재산에 '억울한' 증여세 사후부과 예방해야...사전고지 의무화"(한국세정신문, 2021. 7. 12.)
김 전 대통령은 201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전 재산 60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건립 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가 준공 예정일보다 8년 지연됐고, 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당초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재산 60억원의 절반규모인 30억원의 과세가 통보됐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지난 3월 2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됐고 5월 거제의 조상 묘소가 압류됐다.

모금 규제 완화 및 지원

-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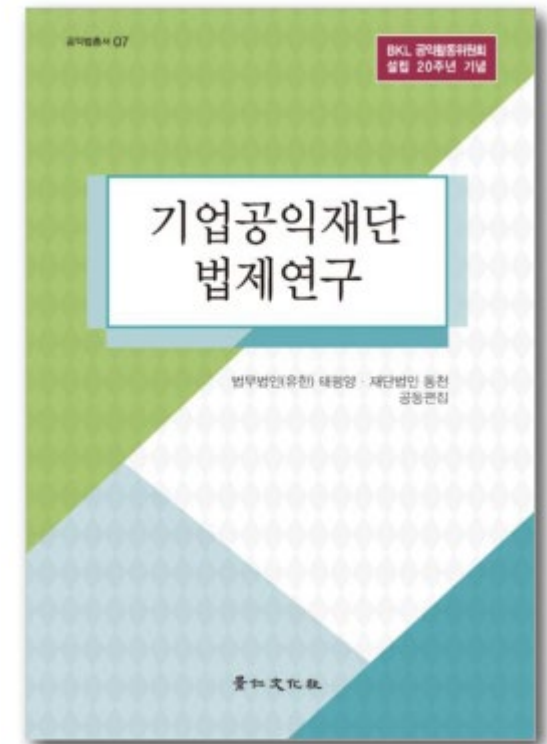
- :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금액 상향 조정, 기부금품 정의, 모집목적, 모집 비용, 적용 대상 제한 등 개정 필요

- : 부동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규제 완화 등

- 세제 혜택 확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싱가포르 250% 세액 공제, 43% 직원 증가)
- 유산기부: 추가 세제 인센티브 필요
- 기부연금제도, 부동산 공익신탁 세제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필요
- 가상화폐 모금 등 관련 법령 정비 필요

기업 기부 활성화

- 보고서: 아시아 국내 총생산의 2% 기부 시 연간 7,010억 달러
- 우리나라 총생산의 2% 기부 시 41조 (미국 GDP 대비 기부금 비중 2.1%, 2017년 기준)
2020년 기부금 총액 14.4조 (개인 9.2조, 기업 5.2조)
- 제약 사항
 - : 주식 기부 제한 (5%, 10%, 20%/ 30%, 50%)
 - : 비용 인정 한도
 - : 배임 이슈 등
-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제도 개선 필요



SDO 사회적 신뢰 제고

- 보고서: 한국 SDO에 대한 신뢰 14% (2022)

기부 문화에 인식 설문조사

Q. 기부 단체 선택 기준은?

1위 응답. 투명성과 신뢰성(68.5%)

Q.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금 단체의 투명성 강화(43.3%)

Q.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모금 단체를 신뢰하지 못해서(46.4%)

(출처:서울경제, 21. 12. 21.자 기사)

자료: 더나은미래, 굿네이버스

시민단체 기부금 어떻게 쓰였나 누구나 들여다본다...인수위 "투명성 강화" (이데일리, 22. 4. 29)
尹정부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기부금 모집때 전용계좌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영리단체 보조금 심사·집행 모니터링 강화
"국민 신뢰 기반 시민단체 공익활동 늘릴것"

CF)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 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SDO 사회적 신뢰 제고

- 규제와 현장의 간극 해소
- 법률상 의무 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안내 강화
- 자율 점검 기준 마련 및 이행 현황 공개
- 투명한 공개, 기부자 대응 관련 행정 인력 강화를 위한 운영비 확대
- 공익 사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시스템 및 홍보 강화

Thank You

2022. 7. 12.

이희숙 변호사